

[별표 4]

안전사고의 유형 및 정의
(제13조제3항 관련)

대분류	세분류	정의 및 분류기준
항공사고	비행사고	비행할 목적으로 군 항공기의 엔진, 모터 등 추진장치를 시동한 때부터 비행을 종료하고 추진장치를 정지할 때까지의 과정 또는 해당 비행에서 발생한 고장·손상에 기인하여 손상을 초래한 사고 * 탄약 및 폭발물, 화학용제, 미사일에 의해 비행 목적의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는 중복 분류를 피하기 위해 항공사고로 분류 * 신규 제작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수락비행을 마치기 전까지 군 안전 사고로 간주하지 않음(계약자에 의한 사고로 처리)
	항공기 지상 사고	비행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항공기와 관련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사고 * 비행 종료 후 추진장치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는 계류·견인·정비·점검·지상시험 등 비행 목적이 없는 지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며 육상과 선박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해당 * 상품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 손상은 항공사고로 간주하지 않음.
무기 및 위험물질 사고	탄약 및 폭발물 사고	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장치의 폭발 또는 작용(적성 행위에 의한 사고 제외)으로 인해 물적 파손이나 인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 * 고의가 아닌 점화, 투하, 폭발 장치로부터의 이탈 또는 발사, 사격장 이외의 지역에 포탄의 탄착을 포함 * 폭발이 없었더라도, 탄약 및 폭발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(탄약고, 리튬전지 저장창고 등)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
	총기사고	총기 사용과 관련한 사고로 오발하거나, 부주의 또는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및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고 * 소형화기, 석궁, 대검 등과 관련한 사고를 포함
	미사일 사고	미사일 또는 미사일 지원 장비가 관련된 사고 * 군 항공기로부터 발사되어 항공기에는 손상이 없었지만, 발사 이후 미사일이 손상 또는 파괴된 사고 포함
	화학 사고	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, 시설 결함·노후화,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·누출되어 발생한 사고 * 오염으로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거나, 오염 제거 비용이 발생한 사고, 사람들이 용제에 노출되어 부정적 생리적 증상을 보인 사고, 대기 중에 방출된 용제의 노출 추정량이 작업자 또는 일반 직원, 시설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치 이상을 초과한 상황

대분류	세분류	정의 및 분류기준
	지향성에너지 사고	지향성 에너지를 무기로써 활용하여 적의 자원에 대한 손상, 간섭, 불능화, 파괴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* 고출력레이저, 마이크로 웨이브시스템, 음속 및 초음속 빔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 * 다만, 주 사용 목적이 무기가 아닌 전자자기장의 방사도 포함
	방사선 사고	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어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
차량사고	일 반 차 량 사고	아래와 같이 국방 기관(부대)에 의해 획득, 임대한 차량으로서, 도로상에서 운용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, 화물 또는 인원의 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* 승용차, 승합차, 스테이션 웨건, 버스, 트럭 등 일반차량 및 구급차 등에 의한 사고
	전투기동 및 특수차량 사고	국방 기관(부대)에 의해 획득, 임대한 차량으로서, 주된 목적이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* 군용 전투 및 전술 차량(탱크, 자주포, 무장인원 수송 차량, 수륙양용차, 고기동 다목적 바퀴 차량 등), 공사용 궤도 차량, 굴착기, 바퀴 달린 트랙터, 산업용 동력 차량(예: 포크리프트), 농업용 타입의 항공기 터그카 등
	개인차량사고	운용자의 소속 및 신분을 불문하고, 군용 차량 및 전투기동, 특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
지상사고	작전 및 교 육 훈 련 사고	군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연습이나 훈련 활동, 군 개개인 또는 집단적 전투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 *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거나 연습 또는 활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적 처치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
	작업 부 대 관 리 사고	민간 산업 분야와 유사한 각종 작업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* 장비의 관리 및 정비,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, 대민지원, 연구실험실 및 행정 사무, 건강관리 업무 등 포함
	생활여가사고	운동여가개인체육 활동, 조직 단결 활동 중 발생한 사고
	기 타 지상사고	위 사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상사고
수상/해상	작전 및	개인/부대의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상 및 해상에서

대분류	세분류	정의 및 분류기준
사고	교육 훈련 사고	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연습이나 훈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 *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거나 연습 또는 활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의료적 처치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
	작업 및 함정(선박)관리 사고	함정 또는 선박에서 승선 중 함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* 보일러 등 장비의 관리 및 정비,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, 대민지원, 연구실험실 및 행정 사무, 건강관리 업무 등 포함 * 함정이나 선박 내에서가 아닌, 조선소 및 수리시설 등에서 승선 중 발생한 사고는 지상사고(작업 및 부대관리)에 해당
	생활여가사고	승선 중 운동여가개인체육 활동, 조직 단결 활동 중 발생한 사고 * 다이빙 또는 물놀이, 수영 활동 등에 일어난 사고를 포함
	기타 수상/해상 사고	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수상/해상 사고
우주사고	인공우주물체 사고	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
	우주발사체 사고	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
	관할권 등 침해	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
	인적, 물적 피해	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
무인체계 사고	무인체계 사고	무인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고 * 지상무인체계, 함정무인체계, 무인항공기 등
	무인 전력지원체계 사고	무인으로 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사고 *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체 등 (단, 150kg 초과 무인 전력지원체계 사고는 항공사고로 분류)

* 제2조 제8호 중 ‘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’는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.